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8. 7. 선고 2015고단 779 판결 모욕,위계공무집행방해

수 원 지 방 법 원 안 산 지 원

판 결

사건 2015고단779 모욕,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선기(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5.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위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관악구 F,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계정: 'G')한 다음 'H'이라는 그룹(친목 모임) 내 게시판에'주문하신 특대 오뎅이요^0^'라는 제목으로 'I 침몰사고 J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고대안 산병원에 도착한 시신을 바라보며 오열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진은 119 구급대원 2명이 2014. 4. 16. I 침몰사고로 희생된 망 K의 시신을 고대안산 병원에 안치하기 위해 옮기는 모습과 이를 바라보며 망K의 어머니인 피해자 L 등 I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망 K의 시신을 오뎅으로, L (희생자 K의 모)을 오뎅을 주문한 사람으로 각각 묘사하였다.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L (희생자 K의 모) $^{[1]}$ 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수사보고(추가 고소장 접수)
- 1. M 작성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뜻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나이 어린 고등학생 K과 자식의 사망으로 오열하고 있는 피해자 L을 각각 특대 어묵과 그 어묵의 주문과 관련된

자로 희화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사이버 공간에 작성해 유포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나아가 어린 고등학생 수백명이 일시에 사망한 대참사로 깊은 실의에 빠져 있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회원이 어느 정도 제한된 사 이트에 올린 모욕적 내용이 담긴 글과 사진이 해당 사이트의 다른 회원에 의하여 외부로 유출되면서 이 사 건 범행의 고소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6.경 언론보도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자신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살을 암시하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9.경 서울 관악구 F,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계정: 'G')한 다음 게시판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중략) 친구들아 너무 슬퍼하지 마,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이니 까. 미안해하지도 마, 누구도 원망하지 마, 운명이니까. 화장 해주세요...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래된 생각입니다'라는 내용의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P'라는 페이스북 내 친목모임 회원들로 하여금 'Q대 G 어제(2. 19.) 저녁 사망 확인되었습니다. 빈소는 R장례식장이라고 합니다. 투신 장소는 무등산 선비바위 근방이라고 들었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계정 'G'의 사망 소식을 경찰서나 언론에 알려지게 함으로써 광주지 방경찰청 관내 5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수십 명으로 하여금2015. 2. 21.경 R장례식장, 무등산 등에 페이스북 계정 'G'의 사망 여부 확인, 수색 활동 및 사체 발견 등을 위하여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신의 사망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지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인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자신의 사망 사실을 알리도록 부탁한 바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수사기관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 조사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의자자 자기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진술하는 등의 행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다 과학적인 충분한 수사를 다하여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공무가 방해되었음과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심홍걸

미주

[1] 1)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L 외에도 I 희생자 유가족인 M (희생자 K의 부), N (희생자 0의 부)도 판시 모욕죄의 피해자 들로 보고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작성해 게시한 글과 이에 부가한 사진의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서의 모욕 내용은 희생자 K을 특대 어묵으로, K의 모로서 K의 시체를 보고 오열하는 모습이 찍힌 피해 자인 L을 특대 어묵의 주문과 관 련된 자로 각 비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M, N가 위 사진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M, N이 모욕의 피해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는 아니한다.